

「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
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5년 3월 6일, 이창열 의원
- 회부일자: 2025년 4월 1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303회 평창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
(2025년 4월 7일 상정 · 의결)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이창열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
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
나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(안 제5조)
- 안전시설의 설치(안 제6조)
- 안전시설의 지원(안 제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※ 검토보고서 전문 [붙임 1]

4. 질의 및 답변 요지: 「생략」

5. 토론 요지: 「없음」

6. 심사 결과: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: 「없음」

8. 기타 사항: 「없음」

붙임 1.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

조례안 검토보고서 1부.

2.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

조례안 1부.

「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
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조례안 개요

- 제안자 : 이창열 의원
- 제안일자 : 2025. 3. 6.
- 회부일자 : 2025. 4. 1.
- 상정일자 : 2024. 4. 7.

2. 제안이유

-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
3. 주요내용

-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(안 제5조)
- 안전시설의 설치(안 제6조)
- 안전시설의 지원(안 제7조)

4. 검토의견

가. 관련 근거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지역의 화재예방
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,
「소방기본법」 제2조의2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의 화재예방 · 경계
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 · 신체 및
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 · 시행하도록 규정하고
있음.

나. 입법의 취지

-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
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재산과 안전
을 보장하고자 함.

다. 조례안의 주요내용

- 안 제2조(정의)에서 전기자동차, 충전시설, 전용주차구역, 안전시
설 및 관계인 등 용어의 뜻을 구체적으로 명시함.
- 안 제5조(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)에서 군수는 전용주차구역
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 · 시행하도록 규정함.

- 안 제6조(안전시설의 설치)에서 관계인에게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를 권고하도록 하고 이때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소방용품을 사용하도록 규정함.
- 안 제7조(안전시설의 지원)에서는 제6조에서 정한 화재예방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을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함.

5. 종합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기자동차 보급에 대응하기 위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시설 설치를 지원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것으로 입법의 취지가 인정되고, 자치사무에 대하여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 되는 사항 없이 제정된 것으로 판단됨.

□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여야 한다.

□ 소방기본법

제2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~ 5. 생략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7. 생략

□ 지방자치법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

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5. 생략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 지도·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7. 생략

불임 참고 자료

□ 고성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[2025.1.1.] 외 55건

(관내 6곳: 강원특별자치도, 고성군, 춘천시, 화천군, 속초시, 원주시)

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이창열 의원)

의안 번호	399
----------	-----

발의 연월일: 2025년 3월 6일

발의자: 이창열 의원

찬성자: 박춘희, 김성기, 이은미 의원

1. 제안이유

전기자동차 보급증가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이 증가하고 있어,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목적 및 정의(안 제1조~제2조)
- 나. 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(안 제5조)
- 다. 안전시설 설치 및 지원(안 제6조~제7조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,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, 「소방기본법」, 「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 : 붙임참조(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)

다. 집행기관의 견수령 : 2025. 1. 24. ~ 2025. 2. 7.(15일간), 아래 표 참조

조례안(의회안)	수정안(환경과)	사유	의회 의견
제6조(안전시설의 설치)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. 1. ~ 3. 생략	제6조(안전시설의 설치) ①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. 1. ~ 3. 생략 ② <u>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용품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.</u>	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인 만큼 법적 승인을 받은 안전 시설이 필요함	[수정안 전부 수용]
<u>〈신설〉</u>	제9조(관계인에 대한 권고)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. 1. <u>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의 지상 설치</u> 2. <u>전용주차구역 및 충전 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</u> 3. <u>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제어, 화재 대응·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</u> 4. <u>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</u> 5. <u>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</u>	관계인들이 더욱더 효과적으로 화재예방을 하는 방향으로 시설을 구축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음	

[조례안]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평창군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를 예방하고 관련 안전시설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군민의 재산과 안전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전기자동차”란 「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및 제5호의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.
2. “충전시설”이란 법 시행령 제18조의7제1항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.
3. “전용주차구역”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라 설치된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춘 장소를 말한다.
4. “안전시설”이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에서의 차량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를 위해 필요한 설비 또는 장비 등을 말한다.
5. “관계인”이란 법 제11조의2에 따른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 설치 의무자를 말한다.

제3조(군수의 책무) 평창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는 전용주차구역에서 발생 가능한 화재로부터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
제4조(다른 조례와의 관계)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 관리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

바에 따른다.

제5조(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)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전용 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계획을 3년마다 수립·시행해야 한다.

1. 충전시설의 현황 및 실태조사
2.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 계획
3.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홍보 및 교육
4.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

제6조(안전시설의 설치) ①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에 대한 화재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설치하도록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1.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감시 전용 열화상카메라, 불꽃감지 센서 등 화재감시 및 경보설비
 2. 물막이판, 질식소화덮개, 충수용 급수설비, 상방향 직수장치, 소화기 등 소화용 시설
 3. 그 밖에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대응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
-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소방용품은 「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37조 및 제40조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성능인증을 받은 것이어야 한다.

제7조(안전시설의 지원) ① 군수는 관계인이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을 위하여 제6조에서 정하는 안전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-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시설 지원의 절차, 범위, 대상 등의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.

제8조(화재 대응 매뉴얼 제작·배포) 군수는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에 화재가 발생할 경우 관계인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화재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배포할 수 있다.

제9조(관계인에 대한 권고)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효과적인 화재예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계인에게 권고할 수 있다.

1.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의 지상 설치
2.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을 지하주차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차장 출입구 인근에 설치
3. 충전 중 배터리 정보 수집 및 충전제어, 화재 대응·방지 기능이 있는 충전시설의 설치
4. 제6조 안전시설의 설치
5.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제10조(협력체계 구축) 군수는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관계인 및 유사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.

제11조(위탁) 군수는 이 조례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사무의 일부를 외부 전문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관계법령]

<지방자치법>

제13조(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)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,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.

1. ~ 5. 생 략

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
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
지도·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·경계·진압·조사 및 구조·구급

7. 생 략

<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>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~ 2. 생 략

3. “전기자동차”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동력원(動力源)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4. 생 략

5. “하이브리드자동차”란 휘발유·경유·액화석유가스·천연가스 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연료와 전기에너지(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받은 전기에너지를 포함한다)를 조합하여 동력원으로 사용하는 자동차를 말한다.

6. ~ 10. 생 략

제11조의2(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)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소유자(해당 시설에 대한 관리의무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말한다)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대상시설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

설치하여야 한다.

1.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
2. 공동주택
3. 특별시장·광역시장, 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, 특별자치시장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 설치한 주차장
4. 그 밖에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보급을 위하여 설치할 필요가 있는 건물·시설 및 그 부대시설

② 제1항에 따른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전용주차구역에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갖추어야 한다.

③ 시·도지사는 「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혁신도시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접지역에 수소충전소를 1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.

④ 제3항에 따라 설치하는 수소충전소의 종류 및 규격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전용주차구역의 규모와 충전시설의 종류 및 설치수량 등은 대상시설의 규모, 용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의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설치 부담을 덜고 그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금융 지원과 기술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.

⑦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전기자동차

2. 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 자동차

⑧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동차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여서는 아니 된다.

1. 전기자동차

2. 하이브리드자동차

3. 수소전기자동차

⑨ 누구든지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및 충전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그 통행로를 가로막는 등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이 경우 충

전방해행위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⑩ 시장·군수·구청장은 교통, 환경 또는 에너지 관련 공무원 등 소속 공무원에게 제7항 및 제8항을 위반하여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하고 있는 자동차를 단속하게 할 수 있다.

⑪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지방공기업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은 소관 업무의 수행 또는 보안 등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이 구축·운영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개방하고, 개방하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위치, 개방시간 및 이용조건 등의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.

⑫ 제11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의 개방 및 정보공개의 범위와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.

<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>

제18조의7(충전시설의 종류 및 수량 등) ① 법 제11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은 충전기에 연결된 케이블로 전류를 공급하여 전기자동차 또는 외부충전식하이브리드자동차(외부 전기 공급원으로부터 충전되는 전기에너지로 구동 가능한 하이브리드자동차를 말한다. 이하 같다)의 구동축전지를 충전하는 시설로서 구조 및 성능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적합한 시설이어야 하며, 그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급속충전시설: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이상인 시설
2. 완속충전시설: 충전기의 최대 출력값이 40킬로와트 미만인 시설
- ②. ~ ⑩. 생략

<소방기본법>

제2조의2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화재, 재난·재해,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·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1. ~ 5. 생략
 6.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
- 가. 지역 및 직장 민방위조직(의용소방대를 포함한다)의 편성과 운영 및

지도 · 감독

나. 지역의 화재예방 · 경계 · 진압 · 조사 및 구조 · 구급

7. 생 략

<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>

제3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) ① 국가는 화재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도록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정책(이하 “화재예방정책”이라 한다)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화재예방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실정에 부합하는 화재예방정책을 수립 · 시행하여야 한다.

③ 관계인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화재예방정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.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 조문

- 제5조(화재예방 및 대응계획 수립), 제6조(안전시설의 설치), 제7조(안전시설 설치 지원 등)
 - 제7조와 제6조에 따라 안전시설을 설치하거나 소방용품을 지원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설치·구입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지원에 따른 비용 발생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」 제3조제5항제2호
 -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·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

3. 미첨부 사유

- 이번 조례안은 전기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 예방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,
- 안전시설 설치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지원 대상, 시설, 수량 등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현시점에 정확한 기술적 비용추계가 어려움.

4. 작성자

작성자	평창군 도시안전국 환경과장 신양문
연락처	(033) 330 - 2340